

中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의 特徵과 主要 內容

鄭 暎 錫* · 程 伊 基**

The Characteristics and Outline of the Chinese Maritime Procedure Law

Cheong Yeong-Seok, Jung Yi-Ki

I. 머리말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海事訴訟特別節次法¹⁾은 동법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사 소송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호하며, 인민법원에서 사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며 법률의 적정한 적용과 해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同法 제1조).

이와 같이 중국이 민사소송법과는 별도로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을 제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중국 사회의 수요에 기인하였다. 즉, 1978년 改革開放以後, 중국은 해상운송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海商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2년 제정된 海商法은 中國의 海事法이 한 단계 진보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입증하지만, 이를 집행할 節次法은 여전히 民事訴訟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改革開放 이후 中國이 가입한 海事 國際條約의 대부분은 實體法의 내용으로서 節次 상의 問題는 締約國에서 國內 法으로 規定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 해사 관련 國際條約에서도 海事 訴訟에 대하여 국내 법상의 명확한 節次 規定을 요구한다.²⁾ 물론 海事 訴訟도 民事訴訟의 범주에 속하지만, 船舶·運送·海洋開發 및 利用 등과 관련되므로 나름의 特殊性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

* 법학박사,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교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 박사과정.

1) 1999年 12月 25日 第9期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第13次 會議에서 통과된 이 법의 원 명칭은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程序法”이다. 중국에서는 “節次”를 “程序”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한국식 법률 용어인 “海事訴訟特別節次法”으로 부른다.

2) 예를 들면 “1976년 해사 채권 책임 제한 협약” 제14조의 규정을 들 수 있다; 박용섭, 해상법론, 형설출판사, 1998, 246쪽 참조.

성을 보완한 特別節次法을 제정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³⁾

실제로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海事 裁判 活動은 수적인 면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4년부터 1999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中國 海事法院에서는 약 25,000여건의 海事사건을 접수하였다. 그 중 3,746건은 涉外 事件이었고, 그 當事者 역시 73개 나라에 걸쳐 있어 여러 나라의 법률적, 해운 및 무역 실무상의 차이점으로 인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⁴⁾

이와 같은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海事 訴訟은 경제가 개방된 국가에 있어서는 國際 私法領域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많은 海事 國際 條約이 制定됨에 따라 각국이 海事 訴訟 節次에 대한 입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어서, 영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파나마·싱가포르 등 주요 海運國은 民事訴訟法 외에 海事 訴訟에 관한 각종의 特別法을 制定하였다고 한다.⁵⁾

中國은 總·數 기준 선복량이 世界 제5위를 차지하는 해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혁 개방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확대됨에 따라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인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으로 복귀한 이후 해운은 더욱 큰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비추어 “海事訴訟特別節次法”的 公布와 發效는 中國 국내의 海事 裁判 수요는 물론 國際 海事 條約 혹은 각종 海事節次法과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그들은 판단하고 있다.⁶⁾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최인접국으로서 중국 시장으로의 적극적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그 역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중국과의 해사 분쟁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의 해사소송특별절차법의 제정과 발효에 기하여 그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분석·소개하여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제정 경위와 특징

1. 제정 경위

中國은 1978년부터 經濟制度의 改革과 對外的인 開放政策을 施行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와서는 市場經濟 體制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計劃經濟 體制에서 市

3) 우리나라의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1991년 12월 31일 제정, 법률 제4471호)”도 이러한 취지의 법률이다.

4) 李國光, “關與中華人民共和國海事訴訟特別程序法(草案)解說”, 在第9屆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第11次 會議上 講話(內部 資料), 1999년 8월 24일.

5) 위의 자료.

6)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은 中國이 先進의이고 比較的 完璧한 海事 訴訟 節次法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WTO에 加入하는데 유리한 法律的 環境을 마련해 주었다. 즉, 中國에서 海事 訴訟을 진행하는 國內外 當事者들의 合法的 權益을 保護하는데 充分한 法律的 기반을 제공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第9屆 全國 人民 代表 大會 會議 資料, 內部用 參照.

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은 이러한 市場經濟를 추진하고 뒷받침할 法律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1992년 11월 7일 “中華人民共和國 海商法”이 公布되어 1993년 7월 1일부터 發效하였다. 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소송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民事訴訟法”이 1991년 4월 9일 公布·發效되었다.

원래 중국의 법률 문화는 大陸法界의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국제 조약과 국제적 商慣習을 대폭적으로 수용하여 입법된 海商法은 英美法의 요소를 많이 가미한 형태를 취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일반적인 법률 체계와는 상이한 점이 많다.⁷⁾ 따라서 해상법의 법률관계를 집행할 절차법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一般節次法인 民事訴訟法만으로는 海事 訴訟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92년 海商法立法草案에는 “海事 紛爭의 解決”, “船舶所有者의 責任制限에 관한 節次” 등 海事 訴訟 特有의 節次에 관한 規定을 두었지만 實體法에 節次의 規定을 둔다는 것이 法體系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반론에 의하여, 法案이 최종 통과될 때에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고 實體法의 규정만을 두어 節次에 관한立法은 추후로 미루게 되었다.⁸⁾

이후 海事 訴訟에 관한 과도기적인 조치로 最高人民法院에서는 海事 訴訟을 진행함에 있어서 준용할 “最高人民法院關於訴訟前·押船舶的具體規定”(1986年 1月 31日, 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通過)⁹⁾, “關與審理船舶·撞和觸·案件財產損害賠償的規定”(1995年 8月 18日 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 第735次 會議 討論 通過),¹⁰⁾ “最高人民法院關與涉外海事訴訟管轄的具體規定”(1986年 1月 31日, 最高人民法院 審判委員會 通過),¹¹⁾ “最高人民法院關於訴訟前·押船舶的具體規定”(1986年 1月 31日, 最高人民法院 審判委員會 通過),¹²⁾ “最高人民法院關與強制變賣被·押船舶清償債務的具體規定”(1987年 8月 29日, 最高人民法院 審判委員會通過),¹³⁾ 등을 두어 해사 소송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과도기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1994년 中國 最高人民法院에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起案委員會”가 설립되어 초안 작성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5년여의 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법안 작성 과정을 거쳐 1999년 12월 25일 第9期

7) 鄭啖錫, 中國海上保險法의概論的考察, 海法·通商法, 제8권 제1호, 165쪽 참조.

8) 第9屆全國人民代表大會會議資料, 內部用.

9) 萬鵬儒, 實用海事法規, 青島, 青島正陽律師事務所, 1998, 768~770쪽 참조.

10) 萬鵬儒, 위의 책, 760~764쪽 참조.

11) 萬鵬儒, 위의 책, 732~735쪽 참조.

12) 萬鵬儒, 위의 책, 726~729쪽; 金正佳·翁子明, 海事請求保全專論,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 244~247쪽 참조.

13) 萬鵬儒, 위의 책, 765~767쪽.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13次會議에 상정되어 법안이通過·公布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發效한다. 따라서 2000년 7월 1일부터는中國의 海事法院¹⁴⁾이 海事事件을審理함에 있어서 이法에 따라 船舶이나 積荷에 대한 假押留, 競賣 및 證據의收集 등 절차를 따르게 된다.

2. 특 징

中國의 司法原則 중 하나의 特色은 中國의 國內法과 中國이 加入한 國際條約이衝突할 경우에는 國際條約이 優先 適用¹⁵⁾되기 때문에 中國이 加入한 國際條約도 海事訴訟에 있어서는 法源이 된다.¹⁶⁾

이밖에 중국에서의 해사법 적용의 特수성에 비추어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의 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海事事件에 대한 관할권 확립을 들 수 있다. 즉, 海事事件은 涉外性을 비교적 많이 띠고 있어, 매년 외국 法廷地의 인정과 執行을 요구하는 裁決과 判決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涉外 海事事件의 관할권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었다. 이에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海事事件에 대한 海事法院의 管轄權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동법 제2장).

특히 “海事紛爭當事者の書面合意에 의하여 중국 海事法院의 관할을 선택할 경우에는 분쟁 발생 지역이 中國의 관할권 지역이 아니어도 中國 海事法院이 관할권을 가진다”고規定하여 合意管轄을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이는 涉外私法 분야에서의 中國 海事裁判制度의 위치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民事訴訟法에 대한 補充的 規定의 성격을 띤다. 즉, 민사소송법이 保全節次에 대하여 規定을 하였지만 行爲 保全과 유사한請求는 財產 保全 혹은 判決前 執行을 통해서는

14) 中國의 法院體系는 地方의 各級 人民法院과 軍事, 海事, 鐵路運輸 등 專門 人民法院, 그리고 最高人民法院등으로 구성되었다(中華人民共和國法院組織法 제2조). 각 地方法院은 基層 人民法院, 中級 人民法院, 高級 人民法院으로 나뉘고, 4級2審終審制를 채택하고 있다(法院組織法 제12조). 職分管轄로 기타 보통 법원과 구별되는 海事法院은 地方法院의 中級 人民法院에 該當하는데, 1984년에 廣州, 上海, 青島, 天津, 大連등 5개가 설립된 후부터 지금까지 海口, 北海, 夏門, 寧波, 武漢등지에 海事法院이 설립되어 현재 10개의 海事法院이 있다. 따라서 海事法院이審理하는 사건은 3級2審終審이 된다(最高人民法院長 鄭天翔, “沿海港口都市海事法院設立決定說明”, 中華人民共和國 最高人民法院公報全集, 1984, 4쪽).

15) 中國 海商法 제268조 :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협약에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 성명을 한 조항은 그려하지 아니한다.”

中國의 民法通則 제142조 제2항, 民事訴訟法 제238조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두어 國際條約에 優先的 效力を 부여하고 있다.

16) 中國이 加入한 海事訴訟과 관련된 主要 國際條約으로는 “1969년 유류오염민사책임협약”(1980년 1월 30일 가입, 동년 4월 29일 국내 발효), “1910년 선박 충돌 협약”(1994년 5월 3일 가입), “1974년 아테네 여객 운송 협약”(1994년 5월 3일 가입) 등이 있다.

해결하지 못한다.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은 海事強制令을 規定하고 있는데, 海事法院은 신청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에게 특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다만 소송 과정에 증거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원칙적 규정만 하였을 뿐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서는 規定하지 않았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이에 대하여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은 訴訟前 證據保全 節次를 규정하였는데 海事 證據保全 申請은 소송 과정에 제출할 수도 있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할 수도 있다(동법 제63조). 즉, 소송 때문에 증거 보전 시기를 지연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증거 보전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하였다.

이밖에도 신청인은 船舶假押留를 신청할 경우 피고의 명칭을 즉시 제공하지 못하여도 신청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對物訴訟을 인정하는 것이다(동법 제25조). 그리고 對物訴訟과 船舶假押留를 구별하고 있다. 대물소송은 法院의 관할권을 얻기 위함이고 船舶假押留는 원고의 海事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강제 조치이다. 그러나 양자는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어 위의 규정은 원고의 대물소송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물소송을 제기하고 船舶을 假押留하는 것은 이미 國際條約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의 이 規定은 中國의 海事法制가 진일보하여 세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海事訴訟의 國際性을 인정하는 법이다. 즉,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은 國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船舶衝突事件에 대한 證據祕密制度를 참고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規定한 普通舉證 및 證據交換原則과는 구별된다. 이에 대하여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답변할 때 海事事故調查表를 작성하여야 하며(동법 제82조), 조사표는 당사자가 거증 완료하고 해사 법원에 거증 완료 설명서를 제출한 후 사실 증거자료의 열람을 허용한다(동법 제84조).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는 본인이 조사표에서 한 진술을 변복하지 못한다(동법 제85조). 이들 규정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증거를 뜯어고치거나 위조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海事訴訟 證據의 객관성·관련성·합법성을 더욱 유력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이다.

共同海損을 심리할 때도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은 결산 기관의 지위와 작용을 명확히 規定하였다(동법 제89조). 공동해손에 관한 결산 기관의 결산 보고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 결산보고는 책임을 분담시키는 의결로 할 수 있다. 이는 국제 관습에 따른 것이다.

넷째, 소송뿐만 아니라 海事仲裁에도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는 節次法이다. 즉, 민사소송법이 仲裁 절차 중의 財產保全, 證據保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仲裁法도 仲裁 중의 재산 보전과 증거 보전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만 하고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人民法院에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

였다.¹⁷⁾

이에 비하여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은 “最高人民法院關與設立海事法院幾個問題的決定”, “最高人民法院關與海事法院收案範圍的規定” 등 법률 문서 가운데 海事事件과 海事請求保全 사건의 범위와 관계되는 절차 규범을 법률 형식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海事法院의 관할권이 仲裁裁決執行과 保全請求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였다(동법 제11조) 이로써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은 仲裁 중의 재산 및 증거 보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海事請求保全과 仲裁의 관계뿐만 아니라 海事證據保全과 仲裁의 관계에 대하여도 명확히 규정하여(동법 제19조, 제72조), 仲裁當事者가 仲裁前에 海事法院에 海事財產保全 및 海事證據保全을 신청할 수 있고 또 海事請求保全과 海事證據保全이 당사자 사이에 달성할 仲裁合意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함으로써 訴訟과 仲裁 사이의 관계가 더욱 잘 조화되게 하였다. 결국 仲裁當事者는 海事仲裁委員會를 거치지 않고 직접 海事法院에 訴訟前保全 혹은 證據保全을 신청할 수 있고, 海事法院은 재산보전, 증거보전, 海事強制令에 대하여 裁定執行하고, 仲裁當事者는 법에 따라 仲裁를 신청할 수 있어 당사자가 仲裁하려는 의사가 법률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은 船舶假押留, 提訴前積荷假押留에 대한 仲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¹⁸⁾ 즉, 신청인은 仲裁전 혹은 仲裁중의 재산보전과 증거보전에 대하여 직접 해당 海事法院에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仲裁節次가 대폭 간소화되어 仲裁의 신속·간결성이 발휘된다.¹⁹⁾

17) 1994년 7월 6일 最高人民法院의 “關與海事法院訴訟前·押船舶的規定”은 節次 规定으로서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견해가 나누어지기 쉽다.

일부 海事法院은 訴訟前船舶假押留는 仲裁前의 船舶假押留와 다르므로法院에서 재산보전신청을 허락하는 裁定을 하였는데 신청인이 제한된 시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仲裁를 진행한다면法院에서船舶을 解放해도 된다고 인정한다.

다른 일부분 海事法院은 신청인이 中國海事仲裁委員會를 통하여船舶假押留를 신청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船舶假押留節次는 당연히 중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仲裁機構를 통하여 다시船舶假押留를 신청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그리하여 仲裁審理를 진행하는 절차 가운데船舶을 압류한 후 仲裁를 신청하면 海事法院에서 압류한船舶을 解放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8)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28조 : 海事請求保全에 의하여船舶을假押留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다. 海事請求인이 30일 내에 提訴 또는 仲裁申請을 하거나 혹은 訴訟, 仲裁 중에船舶假押留를 신청한 경우에는 前項의期間의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46조 : 海事請求保全으로 積荷를假押留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이다. 海事請求인이 15일 내에 提訴 또는 仲裁申請을 하거나 혹은 訴訟, 仲裁 중에 積荷의假押留를 신청한 경우에는 前項의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 반면 海事訴訟特別節次法은 海事仲裁合意의 유효성에 이의가 있을 경우의 관할 및 당사자가 海事仲裁裁決의管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경우 등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海事仲裁실무中地方中級法院이 상술한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접수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海事仲裁事件의 특수성으로 인하여地方人民法院이 비교적 복잡한 부문적 海事事件에 대한 裁定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제13차 초안에 海事法院이 海事仲裁의合意管轄權을 가진다는 规定이 있었는데 통과된 법률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5조

III. 법의 구성과 총칙, 관할권

1. 법의 구성

총 12개 章, 127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은 第1章 總則, 第2章 管轄, 第3章 海事 請求 保全, 第4章 海事強制令, 第5章 海事 證據 保全, 第6章 海事 擔保, 第7章 送達, 第8章 裁判 節次, 第9章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의 設立節次, 第10章 債權申告와 配當節次, 第11章 船舶優先權 催告 節次, 第12章 附則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총 칙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동법 제1조에서 밝혔듯이, 海事訴訟 當事者의 訴訟 權利를 保護하며, 人民法院에서 사실을 밝히고 責任을 분명히 하며 法律의 적정한 적용과 海事 事件의 순조로운 재판 진행으로 한다.

법의 적용 순위에 대하여는 “中華人民共和國 領域에서 海事訴訟을 진행함에 있어서 中華人民共和國 民事訴訟法과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中國이 締結하거나 加入한 國際條約에 涉外 海事訴訟에 관하여 中國民事訴訟法 및 이 법과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條約의 規定을 적용한다. 단, 中國이 留保한 條項은 그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약의 우선적 효력을 명시하고 있다.

海事法院은 海事 不法行爲 紛爭, 海商 契約 紛爭과 法律에서 정한 기타 海事 紛爭에 관한 訴訟을 受理한다. 海事法院 및 그 所在地의 高級 人民法院과 最高 人民法院에서 海事 事件을 審理함에 있어서 이 법을 적용한다.²⁰⁾

3. 管轄

1) 토지관할

海事訴訟의 土地管轄은 中國 民事訴訟法의 關聯 規定을 準用한다. 아래의 海事訴訟은 다음의 規定에 따른다.²¹⁾

- ① 海事 不法行爲에 관한 訴訟은 “中國 民事訴訟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規定에 따르는 외에 船籍港 所在地의 海事法院이 管轄한다.
- ② 海上 運送 契約에 관한 訴訟은 “中國 民事訴訟法” 제28조의 規定에 따르는 외에 仲介港 所在地의 海事法院이 管轄한다.

의 海事 事件에 대한 定義와 海事 仲裁 受理 事件의 성질은 완전히 일치한 것으로서 海事 仲裁 合意의 有效性과 仲裁 管轄 撤回에 대한 신청은 仲裁 裁決 執行에 대한 管轄과 마찬가지로 海事法院에서 管轄해야 한다.

20)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1조 내지 제5조.

21)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6조.

- ③ 海船傭船契約에 관한 訴訟은 船舶交付港, 船舶返還港, 船籍港 所在地 및 被告住所地의 海事法院이 관할한다.
- ④ 海上保險契約에 관한 訴訟은 保險目的의 所在地, 事故發生地, 被告住所地의 海事法院이 管轄한다.
- ⑤ 海船의 船員 勞務 契約에 관한 訴訟은 原告住所地, 契約締結地, 船員乘船港 및 離船港 所在地, 被告住所地의 海事法院이 管轄한다.
- ⑥ 海事擔保에 관한 訴訟은 擔保物 所在地, 被告住所地의 海事法院이 管轄한다. 船舶抵當에 관한 訴訟은 船籍港 所在地의 海事法院에서도 管轄할 수 있다.
- ⑦ 海船의 船舶所有權, 占有權, 使用權, 優先特權에 관한 訴訟은 船舶所在地, 船籍港 所在地, 被告住所地의 海事法院이 管轄한다.

2) 전속관할

아래의 海事訴訟에 관하여는 이 법 제7조의 規定에 따라 海事法院에서 專屬管轄한다.²²⁾

- ① 沿海港口에서의 作業 紛爭으로 인한 訴訟은 港口所在地의 海事法院에서 管轄한다.
- ② 船舶이 油類 혹은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유출하거나 또는 해상 생산과 조업 혹은 船舶의 解體나 修理 작업으로 인한 海洋污染에 관한 訴訟은 污染發生地, 污染被害發生地 혹은 污染豫防地의 海事法院이 管轄한다.
- ③ 中國領域과 中國에 管轄權이 있는 해역에서 이행된 海洋探查開發契約에 관한 訴訟은 契約履行地의 海事法院이 管轄한다.

3) 합의관할 등

海事紛爭의 當事者가 모두 外國人, 無國籍人, 外國의 企業이나 또는 團體이지만 中國의 海事法院에 管轄權을 부여하기로 한 當事者の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紛爭이 中國의 領域과 關聯이 없더라도 中國海事法院은 관할권을 가진다. 海上無主物에 대한 承認申請은 財產所在地의 海事法院에 하고, 海上事故로 인한 失踪宣告申請은 海事事故를 처리하는 주무 기관所在地의 海事法院 혹은 關聯海事事件을受理한 海事法院에 한다.

海事法院과 地方人民法院間에 管轄權에 관해 紛爭이 있는 경우에는 雙方이 協商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될 때에는 그들의 공동 上級法院에서 管轄法院을 指定한다.

當事者가 海事仲裁裁決의 執行을 신청하거나 또는 外國法院의 判決, 命令 혹은 外國海事仲裁裁決의 承認·執行의 신청은 被執行財產所在地 또는 被執行人住所地의 海事法院에 提出한다. 被執行財產의 所在地 혹은 被執行人所在地에 海事法院이 없는 경우에는 被執行財產所在地나 被執行人所在地의 中級人民法院에 提出한다.²³⁾

22) 中華人民共和國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7조.

23) 中華人民共和國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8조 내지 제11조.

IV. 海事請求保全制度

1. 정의 및 일반 원칙

海事請求保全이란 海事請求人の 申請에 의하여 그 海事請求의 實현을 위한 被請求人의 財產에 대한 海事法院의 強制措置를 말한다. 當事者が 訴訟前에 海事請求保全을 할 경우에는 被保全財產所在地의 海事法院에 申請하여야 한다. 海事請求保全(申請)은 當事者間의 당해 海事請求에 관한 訴訟管轄이나 仲裁協議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海事請求인이 海事請求保全을 申請할 경우에는 海事法院에 書面申請을 提出하여야 한다. 申請書에는 海事請求事項, 申請趣旨, 保全할 목적물 및 擔保로 提供할 價額을 계기하여야 하며 관련證據를 첨부하여야 한다. 海事請求保全申請에 대하여 海事法院은 海事請求人에게 擔保를 提供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海事請求인이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申請을 棄却한다. 海事法院은 申請을 受理한 후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海事請求保全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執行하여야 하고, 海事請求保全要件에 符合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申請을 却下한다. 當事者が 결정에 대해 不服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5일 이내에 1차의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海事法院은 異議申請을 받은 5일 이내에 再審決定을 내려야 한다. 再審期間 중에 결정의 執行은 중지되지 아니한다.

利害關係人은 海事請求保全에 대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고, 그 異議申請이 유효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지체 없이 海事請求保全을 解除하여야 한다. 被請求인이 擔保를 提供하거나 또는 當事者が 정당한 사유로 海事請求保全의 解除를 請求한 때에는 海事法院은 지체 없이 保全을 解除하여야 한다. 海事請求인이 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提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仲裁合議에 따라 仲裁를 申請하지 아니한 경우, 海事法院에서는 지체 없이 保全을 解除하거나 또는 提供한 擔保物을返還하여야 한다. 海事請求保全이 이루어진 후 관련海事紛爭에 관하여 訴訟이나 仲裁節次가 진행되지 아니한 때, 當事者は 당해 海事請求에 대하여 海事請求保全을 취한 海事法院이나 혹은 기타 管轄權이 있는 海事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그러나 當事者間에 訴訟管轄이나 仲裁에 관한 合議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海事請求人은 부당한 海事請求保全으로 被請求人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입힌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²⁴⁾

2. 船舶假押留와 競賣

1) 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다음과 같은 海事請求에 의하여 船舶의 假押留를 신청할 수 있다.

24)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12조 내지 제20조.

- ① 船舶의 운영으로 인한 財產의 滅失이나 혹은 損失.
- ② 船舶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死亡이나 傷害.
- ③ 海難 救助.
- ④ 船舶이 沿岸이나 또는 利害關係者에게 損害를 입히거나 혹은 損害의 危險이 있는 경우, 이러한 損害를豫防·減少 혹은 除去하기 위하여 措置를 취한 경우, 혹은 이러한 損害로 인하여 賠償을 지급한 경우, 환경의 회복을 위하여 合理的인 措置를 실제로 취하였거나 또는 취하고자 하는데 든 비용, 제3자가 이러한 損害(事故)로 하여 損害를 입었거나 損害를 입을 念慮가 있을 경우, 또는 본 호에 정한 유사한 性質의 損害·費用 혹은 損失이 있는 때.
- ⑤ 沈沒船, 殘骸物, 坐礁(洲)船, 抛棄船을 인양·제거·회수 혹은 파괴시키거나 無害化하는데 든 費用, 여기에는 그 船舶에 있거나 또는 그 船舶에 있었던 물건의 引揚, 除去, 回收, 破壞 또는 無害化하는데 든 費用 및 抛棄船의 維持와 그 船員들에게 든 費用도 포함한다.
- ⑥ 船舶의 使用 혹은 債船契約.
- ⑦ 貨物 運送 혹은 旅客 運送 契約.
- ⑧ 積荷(手貨物을 包含) 혹은 그와 關聯된 滅失이나 毀損.
- ⑨ 共同海損.
- ⑩ 墓引.
- ⑪ 導船.
- ⑫ 船舶의 運營·管理·維持·整備를 위해 物資나 서비스를 提供한 때.
- ⑬ 船舶의 建造, 改造, 修理, 改良 혹은 裝備.
- ⑭ 港口, 運河, 埠頭, 港灣 및 기타 水路費와 費用.
- ⑮ 船員 賃金과 기타 費用, 여기에는 船員에게 지급하여야 할 送還 費用과 社會保險料를 包含한다.
- ⑯ 船舶 혹은 船舶所有者를 위해 支給한 費用.
- ⑰ 船舶所有者 혹은 裸傭船者가 지급하여야 할 혹은 타인이 대신 지급한 船舶保險料(相互保險料를 包含).
- ⑱ 船舶所有者 혹은 裸傭船者가 支給하여야 할 혹은 타인이 대신 지급한 船舶과 관련되는 프리미엄, 仲介費 혹은 代理費.
- ⑲ 船舶所有權 혹은 占有와 關聯된 紛爭.
- ⑳ 船舶共有人 間에 船舶의 使用 혹은 收益에 관한 紛爭.
- ㉑ 船舶抵當權 혹은 이와 같은 性質의 權利.
- ㉒ 船舶 賣買 契約으로 인한 紛爭.

이 法 제21조에서 規定한 海事請求 외에는 船舶의 假押留를 申請할 수 없다. 그러나 判

決·仲裁判定 혹은 其他 法律 文書의 執行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²⁵⁾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海事法院은 당해 船舶을 假押留할 수 있다.²⁶⁾

- ① 船舶의 所有者가 海事請求에 대하여 責任이 있으며 또한 船舶假押留時 그 船舶의 所有者일 경우.
- ② 船舶의 裸傭船者가 海事請求에 대하여 責任이 있으며 또한 船舶이 假押留時 그 船舶의 裸傭船者거나 또는 所有者인 경우.
- ③ 船舶抵當權 혹은 같은 性質의 權利에 관한 海事請求가 있는 경우.
- ④ 船舶所有權 혹은 占有에 關聯되는 海事請求가 있을 경우.
- ⑤ 船舶優先特權에 관한 海事請求가 있는 경우.

海事法院은 海事請求에 대하여 責任이 있는 船舶所有者, 裸傭船者, 定期傭船者 혹은 航海傭船者가 假押留 실시 시 所有하고 있는 기타의 船舶에 대하여도 假押留를 할 수 있다. 그러나 船舶의 所有權 혹은 占有와 관련된 請求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軍用船과 公務船에 대하여는 假押留를 할 수 없다.

海事請求人은 동일한 事由로 假押留되었던 船舶에 대한 假押留를 申請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²⁷⁾

- ① 被請求人이 충분한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한 때.
- ② 擔保人이 擔保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履行不能의 우려가 있을 때.
- ③ 海事請求인이 合理한 理由로 假押留된 船舶의 解放이나 提供된 擔保의返還을 同意한 때, 혹은 합리한 조치로 假押留된 船舶의 해방이나 提供된 擔保의返還을 방지하지 못할 때.

海事請求인이 被請求인의 명청을 즉시에 밝히지 못할 경우에도 當該船舶에 대한 假押留申請을 할 수 있다. 海事法院은 船舶의 假押留나 解放의 명령을 發布할 때, 관련 부서에 協助執行通知書를 발송할 수 있다. 通知書에는 협조 집행할範圍와 內容을 계기하여야 하고, 관련 부문은 이에 協助할義務가 있다. 필요할 경우에 海事法院은 執行要員을 승선시켜 監護할 수 있다. 海事法院이 船舶保全 결정을 한 후 海事請求인의 동의 하에 船舶의處分을 禁止하거나 抵當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취한 후 해당 船舶의 運營을 허가할 수 있다. 海事請求保全에 의하여 船舶을 假押留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다. 海事請求인이 30일 내에 提訴 또는 仲裁申請을 하거나 혹은 訴訟, 仲裁 중에 船舶假押留를 申請한 경우에는 前項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경매의 요건과 절차

船舶의 假押留期間이 만료하였음에도 被請求人이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하고 船舶에 대

25)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第21조 내지 제22조.

26)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23조.

27)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24조.

한 繼續的인 假押留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海事請求人은 提訴나 仲裁를 申請한 후에 船舶을 假押留한 海事法院에 假押留 船舶의 競賣를 申請할 수 있다. 海事法院은 當事者の 船舶 競賣 申請에 대하여 審查後, 競賣 여부의 결정을 한다. 當事者が 海事法院의 결정에 대하여 不服할 경우, 決定書를 받은 5일 이내에 1차의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海事法院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再審 결정을 하여야 한다. 再審期間에는 결정의 執行을 中止한다. 海事請求인이 假押留 船舶의 競賣申請을 한 후 다시 이를 번복할 경우의 受諾 여부는 海事法院이 결정한다. 競賣取消의 決定을 受諾한 때에, 海事請求人은 競賣를 준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海事法院에서 船舶의 競賣를 결정한 때에는 신문 혹은 기타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外國 國籍의 선박을 競賣할 경우에는 외국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나 기타 언론 매체를 통하여 公告를 하여야 한다. 公告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競賣할 船舶의 船名과 國籍.
- ② 船舶 競賣의 理由와 根據.
- ③ 船舶競賣委員會의 構成.
- ④ 船舶 競賣의 時間과 場所.
- ⑤ 競賣할 船舶의 展示 時間과 場所.
- ⑥ 競賣에 응할 때 필요한 節次.
- ⑦ 債權申告 事項.
- ⑧ 公告가 필요한 기타 事項.

船舶 競賣의 公告 期間은 30日 이상으로 한다. 海事法院은 船舶을 競賣하기 30일 전에 船舶登記國의 登記 機關과 이미 알고 있는 船舶優先權者, 抵當權者와 船舶所有者에게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通知의 內容은 競賣할 船舶의 船名, 船舶 競賣의 時間과 場所, 船舶 競賣의 이유와 근거 및 債權 登記 事項 등이다. 通知의 方式은 書面 方式과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

船舶의 競賣는 船舶競賣委員會에서 실시한다. 船舶競賣委員會는 海事法院의 執行 人員과 초빙한 競賣士, 船舶查證人 등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한다. 船舶競賣委員會는 船舶에 대하여 鑑定·評價額을 정하고, 競賣의 組織과 進行을 담당하며 競落人과 競落確認書를 체결하고 船舶 移轉 節次를 진행한다. 競賣委員會는 海事法院에 대하여 責任지며 海事法院의 監督을 받는다.

競賣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規定한 기간 내에 船舶競賣委員會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登錄할 때에는 本人, 企業의 法定代表人 혹은 기타 團體의 責任者の 身分證明과 授權委任書를 提出하여야 하며 일정 金額의 保證金을 납입하여야 한다. 船舶競賣委員會는 船舶을 競賣하기 전에 競賣할 船舶을 전시하여야 하며 競賣 船舶을 볼 수 있는 조건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競落人은 競落確認書를 체결한 후 지체 없이 船舶 價額의 20% 이상의 金額을 납입하여야 하며 차액은 競落日로부터 7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船舶競賣委員會와 경락인 사이에 特약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競落人이 船舶 貸金을 완납한 후 原 船舶所有者는 지정된 기한 내에 船舶의 碇泊 場所에서 船舶을 現狀대로 경락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船舶競賣委員會는 船舶의 移轉을 組織, 監督하며 船舶이 移轉된 後에는 경락인과 船舶 移轉 完了 確認書를 締結한다. 船舶 移轉 完了 後, 海事法院은 假押留 船舶의 解除命令을 發布한다. 船舶 移轉 完了 後 海事法院은 新聞이나 기타의 言論媒體를 통하여 船舶의 競賣와 새로운 所有者에게 移轉한 事實을 公告하여야 한다.

競落人은 船舶을 접수한 후 競落確認書와 기타 서류를 船舶登記機關에 提出하여 船舶所有權登記를 하여야 한다. 原 船舶所有者는 船舶의 原 登記機關에 船舶所有權 登記의 抹消를 하여야 한다. 原 船舶所有者가 所有權 말소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船舶所有權의 移轉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競賣에 응한 자 간에 惡意의 共謀를 한 때, 그 競賣는 無效이다. 惡意의 共謀에 參여한 자는 競賣 費用과 관련 損害를賠償하여야 한다. 海事法院은 惡意 共謀한 競買者에 대하여 最高 入札 價額의 10%이상, 30%이하의 罰金에 처할 수 있다. 競賣 時 이 節의 規定 외에 “中華人民共和國 競賣法”의 관련 規定을 적용한다. 執行 中에 假押留된 船舶을 경매하여 債務를 변제할 때에는 이 節의 관련 規定을 準用할 수 있다.²⁸⁾

3. 積荷 假押留와 競賣

1) 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海事請求人은 그 海事 請求의 實現을 위하여 積荷에 대한 假押留를 申請할 수 있다. 假押留를 申請할 수 있는 積荷는 被請求人 所有의 貨物이어야 한다. 海事請求人이 假押留를 申請할 수 있는 積荷의 價額은 그의 債權額에 상당하여야 한다. 海事 請求 保全으로 積荷를 假押留 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이다. 海事請求人이 15일 이내에 提訴 또는 仲裁 申請을 하거나 혹은 訴訟, 仲裁 中에 積荷의 假押留를 申請한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경매의 요건과 절차

積荷의 假押留 期間이 만료하였음에도 被請求人이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하고 積荷의 계속 假押留도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海事請求人은 提訴나 仲裁를 申請한 후에 積荷를 假押留한 海事法院에 그 假押留 積荷의 競賣를 申請할 수 있다. 保管할 수 없거나 保管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保管 費用이 貨物의 가액보다 클 우려가 있을 경우, 海事請求人은 그 期間 前에 競賣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海事法院은 當事者の 積荷 競賣申請에 대하여 審查후, 7일 내에 競賣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當事者가 海事法院의 決定에 대하여

28)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25조 내지 제43조.

不服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5일 내에 한번의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海事法院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再審 決定을 하여야 한다. 再審 기간에는 決定의 執行을 중지한다. 積荷의 競賣는 海事法院의 執行 人員과 招聘한 競賣士로 構成된 競賣組織이 實시하거나 혹은 海事法院에서 委任한 기타 機構에서 實시한다. 積荷의 競賣에 관하여 이 節에 規定이 없는 때에는 제2절 船舶 競賣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海事請求人이 海事 請求와 關聯된 船用 燃料, 船用品에 대하여 海事 請求 保全을 申請할 경우, 이 節의 規定을 適用한다.²⁹⁾

V. 海事強制令과 海事證據保全

1. 海事強制令

海事強制令은 海事法院이 海事請求人의 申請에 의하여 海事請求人의 적법한 權益이 侵害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被申請人에 대해 一定한 作爲·不作爲를 命令하는 強制措置를 말한다. 提訴前의 海事強制令 申請은 當事者가 海事 紛爭이 發生한 곳의 海事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海事強制令은 當事者間에 당해 海事 請求에 대하여 訴訟 管轄이나 仲裁에 관한 協議가 있을 때에도 그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海事請求人의 海事強制令 申請은 海事法院에서 면으로 된 申請書를 提出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申請書에는 申請理由와 관련 證據를 첨부하여야 한다. 海事請求人의 海事強制令 申請에 대하여 海事法院은 申請人에게 擔保의 提供을 命令할 수 있다. 海事請求人이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하면 그 申請을 却下한다.³⁰⁾

海事強制令을 내릴 때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³¹⁾

- ① 請求人에게 구체적인 海事 請求가 있어야 한다.
- ② 被請求人에게 法律의 規定이나 契約의 約定을 違反한 行爲가 있어야 한다.
- ③ 상황이 緊急하여 지체 없이 海事強制令을 내리지 아니하면 損害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損害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海事法院은 當事者の (海事強制令) 申請을 받은 후 48시간 내에 決定을 내려야 한다. 海事強制令을 내린 것은 지체 없이 執行하여야 하고, 海事強制令의 要件에 符合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却下한다. 當事者가 決定에 不服할 경우, 決定書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한번의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海事法院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再審 決定을 내려야 한다. 再審期間에는 決定의 執行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利害關係人の 海事強制令에 대한 異議가 成立될 경우에는 海事法院은 海事強制令을 撤回하여야 한다.

被請求인이 海事強制令의 執行을 拒否할 경우, 海事法院은 그 情狀에 따라 過怠料, 拘留의 處分을 할 수 있고, 犯罪가 構成되면 法에 의해 刑事責任을 추궁한다. 個人에 대한 過怠

29)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第44조 내지 第50조.

30)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第51조 내지 第55조.

31)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第55조.

料는 1千元(人民幣)이상 3萬元 이하로 하고, 단체에 대한 過怠料는 3萬元 이상 10萬元 이하로 한다. 拘留 기간은 15일 이내이다. 海事請求人の 부당한 海事強制令申請으로 被申請人이나 利害關係人에게 입힌 損害는 賠償하여야 한다.

海事強制令이 執行된 후, 관련 海事紛爭이 訴訟이나 仲裁節次에 진입하지 아니한 경우,當事者는 당해 海事請求와 관련하여 海事強制令을 내린 海事法院이나 혹은 管轄權이 있는 기타 海事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그러나 當事者 간에 訴訟管轄이나 仲裁에 관한 協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³²⁾

2. 海事證據保全

海事證據保全은 海事法院에서 海事請求人の 申請에 의하여 海事請求의 관련 證據에 대하여 採取, 保存 혹은 封存하는 強制措置를 말한다. 當事者が 提訴前에 海事證據의 保全을 申請한 경우, 保全할 證據所在地의 海事法院에 申請하여야 한다. 海事證據保全은 當事者間에 당해 海事請求에 대하여 訴訟管轄이나 仲裁에 관한 協議가 있을 때에도 그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海事請求人の 海事證據保全申請은 海事法院에 서면으로 된 申請書를 提出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申請書에는 保全할 證據, 당해 證據와 海事請求와의 聯關係, 申請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海事請求人の 海事證據保全申請에 대하여 海事法院은 申請人에게 擔保의 提供을 명령할 수 있다. 海事請求인이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하면 그 申請을 却下한다.³³⁾

海事證據保全을 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³⁴⁾

- ① 請求人은 海事請求의 當事者이어야 한다.
- ② 保全을 請求하는 證據가 당해 海事請求에 대하여 證明作用이 있어야 한다.
- ③ 被請求人은 保全을 請求하는 證據와 관련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 ④ 상황이 緊急하여 지체 없이 證據保全措置를 취하지 아니하면 당해 海事請求의 證據가 滅失하거나 採取가 困難한 경우.

海事法院은 當事者の (海事證據保全) 申請을 받은 후 48시간 내에 決定을 내려야 한다. 海事證據保全決定을 내린 것은 지체 없이 執行하여야 하고, 海事證據保全의 요건에 符合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却下한다. 當事者が 決定에 不服할 경우, 決定書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한번의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海事法院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再審決定을 내려야 한다. 再審期間에는 決定의 執行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被請求人の 異議申請이 받아질 경우, 保全한 證據를 被請求人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利害關係人の 海事證據保全에 대한 異議가 성립될 경우에는 海事法院은 海事證據保全을 철회

32)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第57조 내지 제61조.

33)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第62조 내지 제66조.

34)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67조.

회하여야 하고, 이미 執行한 경우에는 利害關係人과 關聯되는 證據를 利害關係人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海事法院에서 海事 證據 保全을 함에 있어서 具體的인 狀況에 따라 證據에 대하여 封存하거나 複本, 副本을 採取하거나 혹은 촬영, 紙化, 妥約文 작성, 調査 記錄등 方법을 취할 수 있다. 確실히 필요한 경우에는 證據 原本을 採取할 수 있다. 海事請求人の 부당한 海事 證據 保全 申請으로 被申請人이나 利害關係人에게 입힌 損害는賠償하여야 한다. 海事 證據 保全 後, 관련 海事 紛爭이 訴訟이나 仲裁 節次에 진입하지 아니한 경우, 當事者는 당해 海事 請求와 관련하여 海事 證據를 保全한 海事 法院이나 혹은 管轄權이 있는 기타 海事 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그러나 當事者間에 訴訟 管轄이나 仲裁에 관한 協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³⁵⁾

VII. 海事 擔保 및 送達

1. 海事 擔保

海事 擔保에는 이 法에서 規定한 海事 請求 保全, 海事 強制令, 海事 證據 保全 등 節次와 관련되는 擔保도 包含한다. 擔保의 方式으로는 現金 供託이나 保證, 抵當權設定 等이 있다. 海事請求人の 擔保는 海事 法院에 供託하여야 하고, 被請求人の 擔保는 海事 法院에 供託하거나 또는 海事請求人에게 提出할 수 있다. 海事請求인이 提供할 擔保의 方式과 價額은 海事 法院에서 決定한다. 被請求인이 提供할 擔保는 그 方式과 價額에 관하여 海事請求人과 被請求人이 協商하여 決定하고, 協商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海事 法院에서 決定한다. 海事請求인이 海事 請求 保全에 관하여 被請求人에게 요구하는 擔保의 價額은 그 債權 價額에相當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擔保는 被保全財產의 價額을 超過하여서는 아니된다. 海事請求인이 提供하는 擔保의 價額은 그 申請으로 被請求人에게 입힐 가능성 있는 損害額과相當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價額은 海事 法院이 決定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擔保를 提供한 자는 海事 法院에 그 擔保의 減少, 變更 혹은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海事請求인이 요구한 擔保의 價額이 과다하여 被請求人에게 損害를 입힌 경우에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과 假執行 등 節次와 관련되는 擔保에 대하여 본 章의 規定을 準用할 수 있다.³⁶⁾

2. 送達

海事 訴訟 書類의 送達은 “中國 民事訴訟法”의 관련 規定을 準用하는 외에 아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³⁷⁾

35)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第68조 내지 제72조.

36)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第73조 내지 제79조.

37)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第80조.

① 送達 받을 자가 委任한 訴訟代理人에게 送達.

② 送達 받을 者가 中國 領域 内에 設立한 代表 機構, 支社 혹은 業務代理人에게 送達.

③ 收取 與否를 確認할 수 있는 其他의 適當한 方式으로 送達.

船舶假押留에 관한 法律 書類는 當該 船舶의 船長에게 送達할 수 있다.

法律 書類를 받을 義務가 있는 者가 受領을 拒否할 경우, 送達人은 그 상황을 送達回收證에 기록하여 送達人, 證人이 기명 또는 날인한 후, 그 法律 書類를 그의 住所나 또는 사무실에 留置하면 送達한 것으로 간주한다.³⁸⁾

VII. 裁判 節次

1. 船舶 衝突 事件의 審理 節次

原告는 提訴할 때, 被告는 答辯할 때 虛偽 없이 “海事事故調查書”를 記載하여야 한다. 海事法院이 當事者에게 訴狀이나 答辯狀을 送達할 때에 관련 證據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當事者는 法廷 審理 前에 舉證을 完료하여야 한다. 當事者가 舉證을 完료하고 또한 海事法院에 舉證完了 說明書를 提出한 후, 船舶 衝突에 관한 事實 證據 資料의 열람을 海事法院에 申請할 수 있다. 當事者는 “海事事故調查書” 중의 진술과 이미 完료한 舉證에 대하여 번복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證據가 있고, 또한 당해 證據를 舉證期間 内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船舶의 檢查, 價格 評價는 國家에서 授權하였거나 혹은 기타 專門資格을 갖춘 機構나 個人이 한다. 國家가 授權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專門資格을 갖추지 아니한 機構 혹은 個人이 한 檢查나 價格 評價에 대하여 海事法院은 체납하지 아니한다. 海事法院은 船舶 衝突 事件에 대한 審理를 事件接受日로부터 1년 이내에 終結하여야 한다. 特殊한 상황으로 延期하여야 할 경우에는 本院 院長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³⁹⁾

2. 共同海損 事件의 審理 節次

當事者는 共同海損 紛爭에 대하여 損害 查證 機構에 損害 查證을 의뢰할 것을 協議하거나 또는 직접 海事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損害 查證 機構의 損害 查證을 받지 않은 共同海損 事件에 대하여 海事法院은 損害 查證 機構에 損害의 查證을 위임할 수 있다. 損害 查證 機構에서 한 共同海損 查證 報告書에 대하여 當事者가 異議가 없는 경우, 責任 負擔의 根據로 할 수 있다. 當事者의 異議가 있을 경우, 그 報告書의 체납 여부는 海事法院에서決定한다. 當事者는 동일 海損 事故로 인한 共同海損 訴訟節次에 관계없이 非 共同海損 損害에 관

38)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81조.

39)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82조 내지 제87조.

해過失 있는者를 상대로 提訴할 수 있다. 當事者가 동일 海損 事故로 인해 共同海損 事件을 審理하는 海事 法院에 非 共同海損 事故에 관한 訴訟을 提起하거나 또는 共同海損 分擔과 관련하여 責任 있는者에게 求償權 行使의 提訴를 한 경우, 이를 併合審理할 수 있다. 海事 法院이 共同海損 事件에 대한 審理는 事件接受日로부터 1년 이내에 終結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延期하여야 할 경우에는 本院 院長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⁴⁰⁾

3. 海上保險者의 請求權 代位 行使 節次

제3자로 인한 保險 事故에 대하여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保險金을 지급한 후, 그 지급한 保險金의 範圍 内에서 被保險者가 제3자에 대한 賠償請求權을 代位 行使할 수 있다. 保險者의 代位請求權 行使에 있어서 被保險者가 아직 保險 事故를 일으킨 제3자에 대하여 提訴하지 아니한 경우, 保險者는 자기의 名義로 제3자에 대하여 提訴하여야 한다. 保險者가 代位請求權을 행사함에 있어서 被保險者가 이미 保險 事故를 일으킨 제3자에 대하여 提訴한 경우, 保險者는 당해 事件을 受理한 法院에 當事者 變更의 申請을 하여 被保險者가 제3자에 대한 請求權을 代位 行使한다. 被保險者가 취득한 保險金이 제3자로 인하여 입은 損害를 全部 補償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保險者와 被保險者는 共同原告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해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保險者가 이 法 제94조, 제95조의 規定에 의하여 提訴하거나 訴訟에 參加할 경우, 당해 사건을 受理한 法院에 保險者가 保險金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와 訴訟參加에 필요한 기타의 書類를 提出하여야 한다. 船舶의 油類 汚染으로 인한 被害者는 油類 汚染을 일으킨 船舶所有者 또는 船舶所有者의 油類 汚染에 대하여 賠償 責任을 負擔하는 保險者 또는 財物 保證을 提供한 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油類 汚染에 대하여 賠償 責任을 負擔하는 保險者나 혹은 財物 保證을 提供한 者가 被訴된 경우, 油類 汚染 損害를 일으킨 船舶所有者도 訴訟에 參加시킬 것을 請求할 수 있다.⁴¹⁾

4. 簡易 節次, 督促節次와 公示催告 節次

海事 法院에서 事實 關係가 分明하고 權利·義務 관계가 明確하며 다툼이 크지 않은 간단한 海事 事件에 관하여 “中國 民事訴訟法”의 簡易 節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할 수 있다. 債權者가 海事 事由로 債務者에게 金錢 또는 有價證券의 交付를 請求할 경우, “中國 民事訴訟法”의 관連 規定에 符合될 때에는 管轄權이 있는 海事 法院에 支給命令을 申請할 수 있다. 債務者가 外國人, 無國籍人, 外國의 企業이나 團體이지만 中國 領域內에 住所, 代表機構 또는 支社가 있고 支給命令을 送達할 수 있는 경우, 債權者는 管轄權이 있는 海事 法院에 支給命令을 申請할 수 있다. 船荷證券 등 貨物受領證의 所持人이 貨物受領證을 분실

40)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88조 내지 제92조.

41)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93조 내지 제97조.

또는 멸실한 경우, 貨物所在地의 海事法院에 公示催告를 申請할 수 있다.⁴²⁾

VIII. 債權의 申告 · 配當節次 등

1.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의 設立節次

海事 事故가 발생한 후 船舶의 所有者, 傭船者, 經營者, 救助者, 保險者가 法에 의하여 責任 制限을 申請할 경우, 海事 法院에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의 設立을 申請할 수 있다. 船舶이 油類 汚染 損害를 일으킨 경우, 船舶所有者 및 補償責任을 負擔하는 保險者나 기타 貢物 保證을 提供한 者는 法律에서 規定한 責任 制限의 權利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海事 法院에 油類 汚染 損害에 대한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을 設立하여야 한다. 責任 制限 基金의 設立 申請은 提訴 前이나 訴訟 중에 提出할 수 있으나 최소한 一審 判決이 있기 전에 하여야 한다. 提訴 前에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의 設立을 申請할 當事者는 事故發生地, 契約履行地 혹은 船舶假押留地의 海事 法院에 申請하여야 한다.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의 設立은 當事者間에 당해 海事 請求에 대하여 訴訟 管轄이나 仲裁에 관한 協議가 있을 때에도 그 구속을 받지 아니 한다. 海事 法院에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의 設立을 申請하고자 할 경우, 申請人은 書面으로 된 申請을 提出하여야 한다. 申請書에는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의 設立 價額, 理由 및 이미 알고 있는 利害關係人의 이름, 住所와 通信 方法을 記載하여야 하며, 관련 證據를 添附하여야 한다.⁴³⁾

海事 法院은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 設立의 申請을 접수한 후 7일 내에 이미 알고 있는 利害關係人에게 通知를 發送하여야 하며 신문이나 기타 言論媒體를 통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通知와 公告에는 다음의 사항을 記載하여야 한다.⁴⁴⁾

- ① 申請人的 이름.
- ② 申請의 事實과 理由.
- ③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의 設立 事項.
- ④ 債權 登記 事項.
- ⑤ 告知할 기타 事項.

申請人的 海事 賠償 責任 基金의 設立 申請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利害關係人은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혹은 公告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海事 法院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海事 法院은 利害關係人的 書面 異議에 대하여 審查후 15일 내에 決定을 내려야 한다. 異議가 성립될 경우에는 (基金 設立)申請人的 申請을 却下하고, 異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申請人的 海事 賠償 責任 基金의 設立을 許可한다. 當事者가 결정에 대하여

42)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98조 내지 제100조.

43)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101조 내지 제104조.

44)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105조.

不服할 경우, 決定書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抗訴할 수 있다. 2審 人民法院은 抗訴狀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規定한 期限 内에 利害關係人의 異議가 없을 경우, 海事 法院은 申請人의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의 설립을 許可하여야 한다. 申請人에 대한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 設立의 결정이 發效한 후, 申請人은 海事 法院에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을 設立하여야 한다.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의 設立은 現札을 供託하거나 또는 海事 法院에서 認可하는 擔保를 提供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 海事 賠償 責任 基金의 價額은 海事 賠償 責任의 限度額과 事故發生日로부터 基金 設立日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擔保의 방식으로 基金을 설립할 경우의 擔保額은 基金의 價額과 基金 設立 期間의 이자를 합한 金額이다. 現札로 基金을 設立할 경우에는 海事 法院이 指定한 계좌로 입금된 날이 基金設立日이고, 擔保의 방식으로 基金을 設立할 경우에는 海事 法院에서 擔保를 接受한 날이 基金設立日이다. 海事 賠償 責任 基金을 設立한 후, 當事者의 海事 紛爭에 관한 訴訟은 海事 賠償 責任 基金을 設立한 海事 法院에 提訴하여야 한다. 그러나 當事者間에 訴訟 管轄이나 仲裁에 관한 協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申請人의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 設立 申請이 부당한 경우, 이로 인한 利害關係人의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⁴⁵⁾

2. 債權申告와 配當節次

海事 法院의 船舶 強制 競賣에 관한 결정이 公告된 후, 債權者는 公告 期間 内에 競賣될 船舶과 關聯된 債權을 申告하여야 한다. 公告 期間이 만료되도록 申告를 아니한 경우, 이번 競賣 貸金 中에서 求償받을 수 있는 權利를 抛棄한 것으로 간주한다. 海事 法院의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의 設立을 受理하였다는 公告가 發布된 후, 債權者는 公告 期間 内에 特定 場所에서 發生한 海事 事故와 관련된 債權을 申告하여야 한다. 公告 期間 内에 申告하지 아니할 경우, 債權을 抛棄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자가 海事 法院에 채권 신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된 申請과 함께 관련된 債權 證據를 제출하여야 한다. 債權 證據에는 債權을 증명할 수 있는 法적 효력이 있는 判決書, 決定書, 和解書, 仲裁判定書, 公證 債權 文書 및 기타 海事 請求를 증명하는 證據가 포함된다. 海事 法院은 債權者의 (債權 登記)申請에 대하여 審查한 후, 債權 證據를 提供한 것에 대하여는 申告를 接受하고 債權 證據를 提供하지 아니한 것은 申請을 却下한다. 海事 法院은 債權者가 提供한 債權을 證明하는 判決書, 決定書, 和解書, 仲裁判定書 혹은 公證 債權 文書에 대하여 審查 후 眞實 · 適法한 경우에는 確認 決定을 한다. 債權者가 기타 海事 請求 證據를 提供한 경우, 債權申告를 완료한 후에 債權申告를 한 海事法院에 確認의 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當事者間에 仲裁 協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仲裁 申請을 하여야 한다. 海事法院이 確認의 訴에 대한 判決과 決定은 (즉시) 발효하고 當事者는 이에 대하여 抗訴할 수 없다. 海事法院은 債權에 대하여 審查 · 確認후

45)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第106조 내지 第110조.

債權者에게 債權者 會議通知를 발송하고 債權者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債權者 會議에서는 船舶 價額이나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에 대한 配當案을 協商하고 配當 協議를 締結 할 수 있다. 당해 配當 協議에 대하여 海事法院이 認准 決定을 하면 法的 效力を 가진다. 債權者 會議에서 協商이 안될 경우, 海事法院은 “中華人民共和國 海商法” 및 기타 관련 法律에서 정한 配當 順序에 따라 船舶(競賣)代金이나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의 配當案을 決定한다. 船舶의 競賣 代金과 이자 혹은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 및 이자는 함께 配當하여야 한다. 歸責事由 있는 者가 負擔하여야 할 訴訟費用, 船舶의 保存, 競賣 및 配當에 든 費用과 債權者의 共同利益을 위하여 支給된 기타 費用은 船舶 代金을 배당하기 전에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債務 償還 後의 殘額은 船舶의 原所有者 혹은 海事 賠償 責任 制限 基金의 設立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⁴⁶⁾

3. 船舶優先權⁴⁷⁾의 催告 節次

船舶의 讓渡 時, 讓受人은 海事法院에 船舶優先權의 催告를 申請하여 船舶 優先權者가 지체 없이 權利를 行使하도록 監督하고 해당 船舶에 設定된 船舶優先權을 소멸시킬 수 있다. 讓受人の 船舶優先權 催告 申請은 船舶交付地나 혹은 讓受人 住所地의 海事法院에 提出할 수 있다. 船舶優先權 催告를 申請하고자 하는 때에는 海事法院에 申請書, 船舶 讓渡契約, 船舶 技術 資料 등 書類를 提出하여야 한다. 申請書에는 船舶의 이름, 船舶優先權 催告의 事實과 理由에 대하여 記載하여야 한다. 海事法院은 申請書와 관련 書類를 受理한 후 7일 내에 申請의 許可 與否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讓受人이 決定에 대하여 不服할 경우, 한 번의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海事法院에서 申請을 인준한 결정이 발효한 후, 신문이나 기타 언론 매체를 통하여 公告를 하고, 船舶優先權者가 催告期間內에 船舶優先權을 주장하도록 監督하여야 한다. 船舶優先權의 催告期間은 60일이다. 船舶優先權의 催告期間에 船舶優先權者가 權利를 주장하는 때에는 海事法院에 申告를 하고, 權利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船舶優先權을 抛棄한 것으로 간주한다. 船舶優先權의 催告期間이 끝날 때까지 船舶優先權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海事法院은 當事者の 申請에 따라 당해 船舶에 船舶優先權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판결하여야 한다. 판결의 内容은 公告하여야 한다.⁴⁸⁾

IX. 맷 음 말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의 시행 이후 국제 사회에서의 경제적 대외 신인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주로 경제 관계법의 국제화에 노력해 오고 있다. 이 중 특히 중국 경제

46)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111조 내지 제119조.

47) 우리 상법상의 船舶優先特權에 해당한다.

48) 中華人民共和國 海事訴訟特別節次法 제120조 내지 제126조.

의 대외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海商法을 지난 1992년 제정하면서, 국제조약과 국제 해상관행을 대폭 계수하였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와 상당히 다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해상법과 국제조약⁴⁹⁾을 주된 法源으로 하고 있는 海商 관련 소송에 있어서 기존의 민사소송법에 전적으로 의존한 소송절차가 많은 불편을 초래해 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1984년부터 1999년 상반기에만 해사법원에 제소된 25,000여건의 해사사건 중 3,746건이 섭외 사건이라는 점에서 해상관련 판결의 외국법원에서의 승인 등이 중국의 경제적 신인도 제고와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대전제가 된다고 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을 수 없게 된 만큼 해사소송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그동안은 일종의 해사법원 규칙을 통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소송절차를 활용해 왔으나, 지난 1999년 12월 25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립된 “해사소송특별절차법”을 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해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확립, 민사소송법에 대한 보충적 규정, 해사소송의 국제성 인정, 海事仲裁에도 활용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6~7위권의 해운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북태평양으로부터 유럽에 이르는 항로에 있어서는 사실상 최대의 선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해상관련 입법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인 중국에 비하여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해사소송특별절차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우리의 해사소송관련법을 되돌아보고, 특히 중국과의 교역과정에서 해사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우리 해운기업과 무역업체들이 소송절차에 대한 조그마한 상식이라도 갖출 수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우선 주요한 특징과 함께 그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 David J. Sharpe 著, 王力耘 譯, “中國海商法 關與船舶·押和司法變賣的規定”, 國際海商法律實務,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6年.
- 江雨, “論船舶·抑制度”, 海商法研究, 北京, 法律出版社, 2000年.
- 姜衛, 中國民事訴訟法專論,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8年.
- 姜衛等, 民事訴訟法學原理,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年.
- 高衛, “建立以保全海事請求為目的的我國船舶·抑制度”, 中國海商法年刊,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6年.
- 高菲, 中國海事仲裁的理論與實踐,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8年.
- 高言·康軍, 海商法理解適用與案例評析, 北京: 人民法院出版社, 1997年.
- 曲波·蘇曉鴻, “試評『中華人民共和國海事訴訟特別程序法』(送審稿)”, 世界海運, 第1期,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9年.

49)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이 批准한 國際條約에 대하여 國內法에 優先하는 效力を 부여하고 있다.

- 郭國汀, 國際海商法律實務,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6年.
- 郭明瑞, 擔保法原理與實務, 北京: 中國方正出版社, 1995年.
- 金正佳, “海事訴訟特別程序法的立法思考”, 中國海商法年刊, 第7卷,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6年.
- 金正佳·吳自力, “關與強制拍賣船舶制度若干問題的探討”, 中國海商法年刊,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2年.
- 金正佳·翁子明, 海事請求保全專論,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6年.
- 唐德華等, 新民事訴訟法條文釋義, 北京: 人民法院出版社.
- 董開軍, 債權擔保,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97年.
- 莫世健, 中國海商法, 北京: 法律出版社, 1999年.
- 萬鵬儒, 實用海事法規(上, 下), 青島: 青島正陽法律事務所, 1998年.
- 北京大學法學院海商法研究中心主辦, 海商法研究, 北京: 法律出版社, 2000年.
- 司法部律師司等編: 海事律師業務, 北京: 法律出版社, 1992年.
- 司玉琢, 司玉琢海商法論文集, 北京: 法律出版社, 1995年.
- 司玉琢等, 海商法詳論,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7年.
- 徐新銘, “略評最高人民法院 1994年7月6日新頒布的『船規定』和『清償規定』若干條款”, 中國海商法年刊,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5年.
- 徐新銘, 船舶優先權,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6年.
- 徐平等, 臺灣海商法,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3年.
- 徐孝先, “試述財產保全與海事請求權保全的區別”, 中國海商法年刊,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4年.
- 沈達明, 比較強制執行法初論, 北京: 對外貿易教育出版社, 1994年.
- 沈達明, 比較民事訴訟法初論, 北京: 中信出版社, 1991年.
- 楊良宜, 國際商事與海事仲裁, 大連: 大連海運學院出版社, 1994年.
- 楊良宜, 船舶買賣法律與實務, 北京: 人民交通出版社, 1995年.
- 楊良宜, 外貿及海運詐騙貨物索賠新發展, 大連: 大連海運學院出版社, 1994年.
- 梁慧星, 民法總論, 法律出版社, 1996年.
- 吳煥寧, 海商法學, 北京: 法律出版社, 1995年.
- 翁子明, “論訴訟前·押船載貨物的範圍”, 中國海商法年刊,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3年.
- 王強義, 民事訴訟特別程序研究,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3年.
- 王國華, 海事國際私法研究, 北京: 法律出版社, 1999年.
- 汪鵬南, “論涉外海事仲裁協議與財產保全”, 中國海商法年刊,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3年.
- 王孝平, “關與·船制度的探討”, 當代海商法的理論與實踐, 北京: 人民交通出版社, 1997年.
- 劉家琛, 海商法案例選編, 北京: 法律出版社, 1998年.
- 劉振江, 國際民事訴訟法原理, 北京: 法律出版社, 1996年.
- 劉澄清, 擔保法律實務, 北京: 中國公安大學出版社, 1998年.
- 尹東年, 當代海商法的理論與實踐, 北京: 人民交通出版社, 1997年.
- 李國光, “關與中華人民共和國海事訴訟特別程序法(草案)的說明”, 第九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11次會議上的發言, 1999年8月24日.
- 李屏山, “論訴前·押船舶的範圍”, 世界海運, 第1期, 大連, 大連海事大學出版社, 1998.
- 李雙元·謝石松, 國際民事訴訟法概論,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1990年.

- 張忠暉主編,各國和地區海商法比較,北京:人民交通出版社,1994年。
- 朱清,“論·船令瀝及的法律問題”,中國海商法年刊,大連,大連海事大學出版社,1995年。
- 朱清,“論訴前·船若干問題”,中國海商法年刊,大連,大連海事大學出版社,1994年。
- 朱清,海事訴訟與仲裁,大連:大連海事大學出版社,1996年。
- 中國國際法學會主編:中國國際法年刊,北京:法律出版社,1983年~1999年。
- 中國海事仲裁委員會編:中國海事仲裁案例集,大連:大連海事大學出版社,1996年。
- 中國海商法協會主辦:中國海商法年刊,大連:大連海事大學出版社,1991年~1999年。
- 陳珺·楊詳,經濟訴訟與經濟仲裁,北京:中國政法大學出版社,1992年。
- 蔡鴻達,“中華人民共和國海事訴訟特別程序法述評”,仲裁研究所簡報,北京,中國國際商會 第7卷 第1期,2000年。
- 馮立奇,“中國海事法院 設立 15周年 紀念會上的發言”(中國內部資料),1999年。
- 何江海,“論錯誤·船”,中國海商法年刊,大連,大連海事大學出版社,1997年。
- 何美歡,香港合同法,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5年。
- 韓德培·韓健,美國國際私法(衝突法)導論,北京:法律出版社,1994年。
- 胡正良主編,國際海事條約匯編,大連:大連海事大學出版社,1994年。
- 侯軍,國際海事法與案例分析,上海:上海海運學院出版社,1987年。
- 侯軍,呂建等,當代海事國際私法,上海: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1990年。
- 侯軍,呂建,當代國際海事法,北京:人民交通出版社,1992年。

